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66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박정하 · 유용원 · 조은희
안철수 · 이소희 · 김은혜
서천호 · 엄태영 · 정성국
서범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2항제1호 중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⑦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7조(벌칙)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0조제2항 <u>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 · 제3호 ·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u></p> <p><u><신 설></u></p> <p>2. ~ 14. (생 략)</p> <p>③ ~ ⑥ (생 략)</p> <p><u><신 설></u></p>	<p>제9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u>각 호의</u>----- ----- -----</p> <p><u>1의2. 제10조제3항제1호 · 제3호 ·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u></p> <p>2. ~ 14.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u>⑦ 제1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u></p>